

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

원도급자의 부도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1996년도에 도입되면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는 업체의 요건을 2001년도에 대폭 강화하였으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이 저조한 실정이었다.

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관계기관 등 각계 요로에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하도급대금지급제도의 법률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.

그 결과 하도급법개정(안)이 지난 2003년 11월 24일에 개최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,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20일 공포되었다(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).

■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

1)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

하도급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벌금 부과

※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- ① 1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
- ②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"A"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(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업체)
- ③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

2)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 및 원도급자의 이행조치 확보

시행령에 근거를 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를 법률로 격상

※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

- ① 원도급자의 파산, 등록취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
-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,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
- ③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원도급자의 기성부분 확인 등 협조의무 명시 및 위반시 과징금 부과로 직접지급 이행조치 확보